검 토 보 고 서

의 안 제 8 호

2021. 02. 17.

건 명	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구본선 의원 외 5인	제의연월일	2021. 02. 09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2. 09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사회·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□ 주요내용

- O 지급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, 논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,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(안 제5조)
- O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안 제6조)
-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음.(안 제7조)
-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(안 제8조)

□ 검토의견

- O 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봄.
- O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 됨.